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과징금 부과 시의 매출액 산정기준을 기존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해당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에서 해당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해당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여 현재의 위반 책임에 걸맞은 제재 수준을 확보하는 한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경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매출액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0조의2제1항 개정)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체 매출액을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해당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함.

나. 과징금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안 별표 1의5 개정)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

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3.16. ~ 2026.4.27.) 진행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 본문 중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연평균 매출액”을 “다음 각 호의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사업연도”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매출액
2. 해당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연평균 매출액. 다만,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1의5 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과징금 감경의 제한

나목과 다목에도 불구하고 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 조정 및 2차 조정에서
산정되는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
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② ~ ⑥ (생략)	<u>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 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직 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 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 한 금액으로 한다.</u> ② ~ ⑥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연 락 처	(02) 2100 - 3102